

#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

2022. 4. 2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4월 27일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고 승 범 위 원 장

(의결 제126호~제144호, 보고 제25호~제30호)

도 규 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정 은 보 위 원

(의결 제125호~제126호, 제128호~제144호, 보고 제25호~제30호)

김 태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2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8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2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8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25호 『(주)카카오뱅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카카오뱅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26호 『(주)케이티 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케이티 등 2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7호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8호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복위 채무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채무조정 신청과정에서 채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0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1호 『○○○에 대한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최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흥국생명(주) 등 4개 금융회사에 이해상충방지조치를 이행하고, 적격성 요건 미충족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2호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3호 『(주)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코람코자산신탁의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신탁회사는 신의성실의무를 지고, 분양대행사와도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음. 이 사안은 위탁회사와 분양대행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는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함. 개발신탁 시 신뢰가 있는 신탁사의 브랜드네임을 차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신탁사의 신용을 감안해서 투자함. 신탁회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음에도 선관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는 자본시장법상에 제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의문이 듦. 자본시장법 제39조에 명의대여금지 조항이 있음. 이 사례는 신탁사들이 명의만 제공하고, 위탁회사와 분양대행사가 서로 모의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사건임.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해봄.

○ (보고자) 제39조 명의대여금지 원칙 적용을 검토했는데, 실무적으로 구성요건에 부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말씀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며, 향후 제도개선시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4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5호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재개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재개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6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가칭)알파브릿지(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7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2.4.26.)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감독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8호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 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등 회계감사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9호 『키움증권(주)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키움증권(주)을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에 한하여 종합금융 투자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0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제141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제142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3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 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1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한국 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지분 분산 확대 유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정도 보상으로는 매우 약함. 지분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 정책 목표가 지분 분산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자본의 확충을 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보상들을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임.
- (보고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코넥스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더많은 지분을 내놓기 위해서 코넥스 시장에서는 최소한의 지분만 내놓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임.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발표한 이 내용 외에도 코넥스 시장 등 여러 가지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위원) 방금 보고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분 분산 확대 유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 방안 말고 다른 것들도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음. 이번에 의결되는 안건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월에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기 바람. 아울러,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시 말해,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각각의 종목과 거래량을 무조건 활성화한다는 목표보다는 수요자인 기업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각 시장에 기대하는 핵심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앞으로 시장 간 규제와 기능을 재분배하고 성과지표도 차별화하고,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다 같이 합동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발굴하여 개선사항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4호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체계 및 대면거래 예외사유 등을 정비하는 내용

○ (위원) 금번 규정 직접 개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법조문

을 보다보니까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음. 은행감독규정 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사모펀드 제도개선하면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가지 형태로 제도를 나누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한다는 것으로 타법개정을 쪽 해줬는데 이것이 감독규정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임. 규제법무 쪽에서 한번 체크해서 법제처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음.

- (위원) 저도 의문이 있어서 하나 여쭙보겠음. 여기 보면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 허용'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대면거래를 하는지?
- (보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은 본점이 있기 때문에 본점에서 해야함.
- (위원) 민법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음. 지금 시대가 다 전자적으로 가고 있는 시대인데, 민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규정을 따라 대면으로 거래해야 되는 것이라면, 더군다나 점포가 없는 상황에서 다 본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민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 (위원) 연대보증 없애는 추세이고, 인터넷은행은 점포가 없고 전자거래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대면거래를 허용해 주면서까지 연대보증을 굳이 해줄 필요가 있는지, 인터넷은행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해 주는데 연

대보증까지 받아가면서 확실하게 취급하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 보증 없이 혁신적인 기법으로 하는 것이 인터넷은행에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점까지 가야 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영업점을 내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아마 지금 중소기업 대출은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가 별로 없을 것임. 중신용자대출을 많이 늘리라고 했을 때 고신용자 쪽에 몰린 이유도 있음. 아직은 시스템들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초기에 신용평가만으로 대출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임. 금융위에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초기에는 허용하되 점진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음. 그래야 혁신금융 쪽도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음. 보증도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데이터가 쌓였을 때 보증을 없애는 방식도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음.
- (보고자)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음. 사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전통적인 신용평가기법이 아닌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를 해서 실제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대출이 나가는 것이 맞는 취지인 것 같음. 다만, 과도기적으로 연대보증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비대면 거래 확대라든지 최근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연대 보증 계약도 줄이고 가능하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등 계속 노력 하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5호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검토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대해 검토한 내용

- (위원) 비조치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지침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권해석을 통해서 비조치의견서만 내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법 해석에 대한 판단은 비조치의견서라는 형태로 내보내게 됨.

- (위원) 단기자금의 단기는 기간이 얼마인지? 유가증권 매입이라는 것이 기간이 없으면 그냥 대기업 대출하고 똑같지 않은지? 여기 단기자금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단기자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은지? 1년인지?
- (보고자) 통상 1년을 기초로 하는데 저희가 1년으로 제한해서 이것을 해석하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금감원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음.
-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특정 하는 것이 좋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6호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한 것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이 증권성이 인정이 되어서 불법이 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뮤직카우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새로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 (보고자) 지금 (주)뮤직카우가 새로운 조각상품을 시중에 IPO와 비슷하게 발행하고 있고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수료를 얻고 있는데, 전자의 활동,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태로 조각상품을 발행하는 것은 전면 중단시키고 유통시장 운영행위는, 기존에 17만 명의 투자자들이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조건을 내보냈음.
- (위원) 그러면 다른 조각투자자들이 동일한 구조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샌드박스로 오면 그것은 다 허용을 할 것인지?
- (보고자) 그렇지 않음. 원칙적으로는 샌드박스라는 것은 규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허가 규정이나 법적 제도와 다르게 규제적용을 배제해줘야 할 특별한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임. 그래서 뮤직카우에 대해서도 그것은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될 것임. 다른 조각투자업자들도 저희 가이드라인을 보고 본인이 해온 것들이 위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지, 당연하게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은 것들을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음.
- (위원) 가이드라인은 저도 봤는데 이 (주)뮤직카우의 경우에는 이 상태로 계속 허용을 하실 생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분리하라고 요구를 하실 것인지?

- (보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뮤직카우가 현재 투자계약 증권의 구조로 계속 가는 것은 투자자들의 이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신탁구조화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특례가 부여가 될 것 같음. 그러면 그것이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 동안 부여되는데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이 음악재산권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뮤직카우가 운영을 하게하고, 그런 것들은 다른 조각투자자한테도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음. 다만, 나중에 제도화가 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발행자가 유통시장을 같이 운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적·한시적으로만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 특례를 부여할 예정임.
- (위원) 보통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들어오면 그것을 허용했을 때 우리가 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전제하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보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리고 나중에 이러한 조각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것의 유통시장이 생기고,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음.
- (위원) 알겠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음.
- (위원) 만약 저작권 그 자체로 거래가 됐으면 우리가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

- (보고자) 규제할 수 없음.
- (위원) 그런데 (주)뮤직카우가 나온 계기는 저작권법이나 여러 가지 협회의 약관이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거래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작권인데 신탁을 하고 그것을 불특정다수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구권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유가증권성이 인정이 된 것임.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유가증권성이냐 아니냐, 우리가 규제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을 가지고 앞으로의 규제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을 때 정부가 어떤 규제 체계를 정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함. 지금 조각투자도 자꾸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유가증권성이 있다 없음을 판단하기 보다는 모든 재산적 거래가치가 있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거래가 되어서 그것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고 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불특정다수를 통해서 다자간 매매체결하는 그런 거래소 체계에 대해서 디지털금융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하고 그 거래대상이 어떤 것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안 할지 정해야 함.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래소 같은 유사시설을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유사시설이 안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별도계좌를 개설해서 이체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래소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음. 예를 들면 ‘롤린’이라는 노래가 있음. 여기 ‘저작권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생각함. ‘롤린’의 가치, ‘종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하라고 해도 어렵고 이것은 사람마다의 미(美)의 영역인데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음. 나중에 이것을 실행할 때도 결과적으로 보면 저작권의 가치라는 것은 경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마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도 나중에 규제 체계를 만들 때 조금 더 세련되게 해야 될 것 같음. 결국에는 유통시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그것에 맞는 거래소의 의무, 거래되는 자산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줘야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체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얘기한 것도 장기적으로 그런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임.
- (보고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각투자라는 것의 원래 형태가 재산권을 분할해서 실물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었음. 그런데 그것이 증권화 되고 있는 것임.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공동투자로 어떤 아파트를 사고 월세수익을 획득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제가 월세수익이나 매매수익을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대다수의 조각투자자들은 그런 인식으로 들어가고 있음. 그래서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면 투자자 보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정위가 하는 표시 방법 정도만 잘 지키면 기본적으로 재산권이 없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그래서 저희가 금융규제를 들이댈 영역도 아닌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태는 점점 그런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에서 증권화하고 있음. 그러면 증권화가 됐을 때는 또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투자자와 관련된 발행공시 유통규제를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임.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증권으로 조각투자를 다 포섭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분할하는 형태가 아닌 증권화된 것들은 증권규제를 지키는데 이것을 새로운 시장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보기 위해서 현행 규제를 다 적용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적용해야 될 규제가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최소한 2년 또는 4년 후에는 자본시장법 안에 조각투자를 증권화하는 경우에 맞는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망하면 제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는 그런 구조를 (주)뮤직카우가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는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요건을 조건으로 일단 부과하고, 향후에 이 시장이 발전되는 양태에 따라서 좀 더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면 (주)뮤직카우는 유사시설인지? 아닌지?
- (보고자) 유사거래소업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번에 증권으로 포섭된 카테고리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증권업 규제는 적용을 안 받는 증권이 하나 있음. 그

러다보니까 (주)뮤직카우는 그런 유사거래소업에 대한 위반소지는 없었음. 하지만 조각투자자들 중에 지분증권의 형태로 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해당될 여지도 많이 있음.

-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유가증권성을 인정했는데 유사시설 개설금지에 해당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 (보고자) 유가증권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만 투자매매중개업, 거래소업과 같은 업규제 적용을 안 하고 발행공시규제만 적용되는 유형이 있었음.
- (위원) 그것이 모순이 생기는 것임.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은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 은행에 있는 유가증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대규모 유통을 전제를 하는 증권에다가 투자유가증권이라고 해놓고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유사시설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은, 사실 꼼꼼이 들여다보면 모순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이 지금 (주)뮤직카우는 상대매매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를 60만 원에 사지만 어떤 사람은 49만 원에도 살 수 있음.
- (보고자) 기술적인 이슈입니다만 (주)뮤직카우는 지금 완전경쟁매매 방식으로 하고 있음. 그래서 더 시세조종의 문제가 있음.
- (위원) 경쟁매매가 아님. (주)뮤직카우는 가격이 똑같아야 체결해줌. 높게 살 사람, 싸게 팔 사람이 나오긴 나오지만 체

결은 그 금액을 특정을 해야 체결이 됨. 그러니까 상대매매  
임. 그런데 상대매매로 하니까 그 지수의 신뢰성이 굉장히  
부족함. 지수가 200에 갔다가 300에 갔다가 100에 왔다가  
하지만 산출하는 지수에 신뢰성이 부족한데, 이 회사가 제  
대로 투자자 보호를 하려고 하면 그 상대매매 체계를 아까  
말한 경쟁매매 체계로 바꿔준다는 것은 시장을 개설해 주는  
것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임. 그러면 특별한 시장을 만든  
것을 법으로 해서 엄청난 물적시설, 거래소의 공시규정, 업  
무규정, 상장규정을 다 갖추게 해야 그 사람한테 완전경쟁  
매매를 시킬 수 있음. 우리가 비상장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상대매매니까, 두 사람 의사의 합치가  
단지 전자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  
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유사시설 개설 금지냐  
아니냐를 보면 상대매매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갈 수는 있  
는 것임. 그런데 이 상대매매거래를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금융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샌드박스에 갔을 때 거래소와 같은  
거래체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초가라는 것이 없음.  
시초가, 주가, 지수를 산출하는 체계들이 상당히 조악해서  
아까 말한 시세조종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왕 (주)뮤직카우의 투자자를 보  
호하기 위해서 뭔가 해 주려고 하면,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다자간 매매하는 것에 대한 체계를 세워놓고 그것으로 이끌  
어가야 되는 것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유통체계  
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결과적으  
로 보면 나중에 실제로 투자자 보호 효과를 거두고, 유가증  
권성 판단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

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지만 투자자 피해는 일어나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됨.

- (위원)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융위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근거 위주로 해서 보게 된 것임. 다음 안건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음.
- (위원) '롤린'이 처음에는 30만 원 하다가 60만 원, 80만 원으로 올라가고 100만 원 넘는 것도 많았는데 사람이 몰려서 오른 것이지 그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이 없음. 그런데 지금 특히 미(美)의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평가 방법을 누군가가 제시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임.
- (보고자) (주)뮤직카우 제재절차 개시 보류 조건에 저작권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투자자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하라는 것을 왜 넣느냐 하면 (주)뮤직카우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 구조를 쪽 보다보니까 제일 첫 단계에서 저작권 원보유자로부터 뮤직카우(에셋)가 저작권을 사오는데 그 매각대금을 밸류에이션 할 때 저작권 사후 70년을 감안해서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본인들만의 영업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라는 뜻임.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옥션으로 시작을 할 때 이 매각대금의 120% 이내에서 처음에

시초가를 결정함. 그래서 매각대금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고, 갑자기 묻는 것은 아님.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7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

○ (위원) 질문이 하나 있음. 골프장회원권거래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규율이 됩?

○ (보고자) 어떤 법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거래행위로 준해서 규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은 골프장 회원권도 실제 사용권이 있는 것 말고 수익권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도 그것을 조각투자를 해서 공동지분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보는 시각은 조각투자와 동일함. 다만, 그것은 재산권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써 보호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권 쪽에서 증권 규제도 안 받으면서 재산권도 없는 형태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되겠음.

- (위원) 동 안건은 최근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각투자와의 관련하여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이드라인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당분간 사업모델별로 개별적인 문의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다들 바쁘시겠지만 특히 금감원에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램. 개별문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더 명확한 적용례가 형성되면 이를 유형화해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투자자 유의·경보 등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음.
  
- (위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임. 그런데 결국 왜 이런 시장으로 진화, 발전하느냐는 것은 결국 온라인의 발전인 것임. 이런 시장으로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재산권에 있어서 소유권이냐 청구권이냐 수익권이냐에 대한 구분을 지금은 했습니다만 온라인 거래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구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질 것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준을 잡더라도 결국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조각투자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나중에 우리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관계가 생성이 될 수 있음. 온라인이라는 너무나 광활한 거래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나중에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음.

○ (위원) 중요한 말씀임.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케이스별로 여러 문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형화해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음. 앞으로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도 그렇고, 금융위가 하는 일이 전부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8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9호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0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결과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5분 폐회)